영남의대학술지 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영남의대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날조: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는 행위
2. 변조: 과학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중게재(중복출판):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
5. 저자: 논문을 위한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논문의 날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75년에 만들어지고 2000년에 개정된 헬싱키 선언에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미국의 National Health Institute (NIH) 등에서 발간한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최근판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책임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 중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5. 간행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출판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출판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저자는 본 규정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단, 저자들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간행위원회에서는 ICJM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다른 언어로 된 이차출판 등을 허용할 수 있다.
4. 간행위원들은 연구윤리나 출판윤리의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로서 구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 등에 따른 편집업무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날조나 이중게재, 심각한 변조나 표절, 기타 연구수행과정의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드러난 경우, 게재불가 조치와 함께 저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게재된 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본 학회지를 통한 공지, 국내외 학술논문 데이터 베이스사에 대한 통보, 향후 본 학술지에 대한 영구적인 투고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기타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경우 간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저자들에 대한 서면경고, 본 학회지를 통한 공지, 일정 기간 동안의 투고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상기 조치 사항의 적용은 주저자 및 책임저자, 공동저자 등 논문 작성의 역할에 따라 경중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조치사항에 대한 의결)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종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5조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 참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을 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한의학인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